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영등포구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건강권 및 혐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발 의 자: 신홍식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근거 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면 활자를 바탕으로 한 서적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추진 근거 추가 및 지역서점 대상 구체화(안 제1조~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와 연계하여 계획수립 내용 추가(안 제5조)
-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항 등 지원내용 추가(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를 목적조항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조항이며,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1년 이상”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하되,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지역서점 지원)는 구청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요건을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서점의 요건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
----------	-----

발의년월일: 2023년 3월
발의자: 신흥식·유승용·우경란
이순우 의원(4인)

1. 제안이유

근거 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면 활자를 바탕으로 한 도서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13. ~ 2023. 3. 17):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고,

제2조 중 “일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으로 한다. 같은 조 “다만, 학원·납품위주 업체·유통사·도매업·종교서적 전문서점·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제4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중 제3항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 중 제2항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같은 조 제3항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 중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를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
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신
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생략)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6. (생략)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

<p><u>한다.</u></p>	<p><u>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신 설></u></p>	<p><u>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u>제12조 ~ 제14조 (생 략)</u></p>	<p><u>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u></p>